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89
----------	-------

발의연월일 : 2026. 4. 13.

발 의 자 : 김석기 · 김종양 · 김용태
안철수 · 이만희 · 이현승
유용원 · 김기현 · 권영진
김 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은 살인·폭행·강간·강도·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에만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경찰관이 다양한 범죄 상황에 대응하는 데 제약이 있음.

특히, 범죄의 양상은 사회 변화에 따라 급속히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으며, 특정 범죄만을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져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공백이 발생

할 수 있어 형의 감면이 되는 대상 범위를 특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형의 감면이 되는 특정 범위를 삭제하여 범죄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하며 최소 범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물리적 행사가 보호되도록 함으로써, 경찰관의 소극적 대처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각 호 삭제 등).

법률 제 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범죄”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
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
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
른 아동학대범죄

<삭 제>